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성 북 구

(세무1과)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367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

나.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출연금 지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14,632천원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각종 지방세 세제개편 등의 기초연구자료를 제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붙임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검토 결과서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검토 결과서

1. 출연대상 현황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1. 4.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기　　구 : 5실 1사업단

○ 주요기능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 수행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2. 출연사업 개요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 지방세 연구사업 - 연구과제 수행 (기본과제, 기획과제, 정책과제) ○ 연구성과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 정책 현안을 신속히 분석·대응하는 간행물 발간 - 지방세포럼, KILF Report, 지방재정논집 등
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 사업	○ 지방세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자문을 통한 자치단체 협력 강화 ○ 세정실무 정보제공을 위한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3. 필요성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의 출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연구 등 정책개발을 위한 출연료 지원 필요

4.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5. 기대효과

○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조사자료를 토대로 신뢰성 있는 지방세 개선방안 및 정책결정에 반영

○ 체계적인 지방세에 대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해석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으로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참고 출연금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9.>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9.>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